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하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면적 기준을 삭제 및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 용도를 확대(추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기준 삭제 및 건축물용도 확대(안 별표 1, 별표 2)

1) 면적 기준 삭제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100m²→0), 지역아동센터(300m²→0)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300m²→0), 안마시술소(500m²→0)

2) 건축물용도 확대(추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24. ~ 6.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5) 중 “공공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소방서, 방송국”으로 하고, 같은 목 (8) 및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침술원, 접골원

(9) 지역아동센터

별표 1 제2호나목(3) 및 (4)를 각각 (6) 및 (7)로 하고, 같은 목에 (3)부터 (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6)(종전의 (3)) 중 “관람석의”를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으로,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목 (7)(종전의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을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독서실, 기원

(7) 안마시술소

별표 1 제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2 제3호나목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란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1 종근 린생 활시 설	수퍼마켓 ·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 · 미용원 · 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음식점 · 제과점 등 음료 · 차 · 음식 · 빵 · 떡 ·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소방서, 방송국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침술원·접골원(5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지역아동센터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제2 종근 련생 활시 설	일반음식점(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일반음식점(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장 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독서실, 기원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공연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안마시술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또는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중이용시설을 이 영 시행 이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307